

의안번호	2200790
의 퇴 인	신영대의원
회 답 일	2024. 6. 26.
추 계 번호	24B12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제1항 제4호 신설(동물의 구조·보호)	시·도지사 ¹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동물의 구조·보호)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동물의 구조·보호—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의 보호조치(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 개정안은 시·도지사¹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을 인지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유자의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 수, 방치된 동물의 유형, 동

물 유형별 부상 정도에 따른 치료비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circ \text{ 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소유자 부재로 방치된 동물의 치료·보호조치 비용})$$

$$= \sum_t (\text{동물 수} \times \text{치료·보호조치 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동물 유형(개, 고양이, ..., 등)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향후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되는 동물의 수 및 유형, 치료·보호 조치 기간 등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예산 8억 4,000만원 규모(4만마리 대상)이며, 2022년 기준 유실·유기 동물은 총 113,440마리를 구조함

※ [참고자료] 2022년 동물 구조·보호 현황 참고

[표 1] 최근 5년간 동물 구조·보호 예산: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마리)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지원 (3741-333)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400	650	840 ¹⁾	840 ¹⁾	840 ¹⁾
구조, 보호 동물 마릿수	30,769	30,952	40,000		

주: 1) 840백만원 = 4만마리×단가 7만원×국고 보조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표 2] 구조동물 현황(축종 구분)

연도별	전체	개		고양이		기타(토끼 등)	
	합계(마리)	마리	비율(%)	마리	비율(%)	마리	비율(%)
구조 동물('20년)	130,401	95,261	73.1	33,572	25.7	1,568	1.2
구조 동물('21년)	118,273	84,723	71.6	32,098	27.1	1,452	1.2
구조 동물('22년)	113,440	80,393	71.6	31,525	27.8	1,522	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2년 동물의 등록·동물보호센터 등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3.8.10.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2022년 동물 구조·보호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¹⁾

[구조동물 구조·보호 현황(시도별, 축종별 %)]

(단위: 마리, 비율(%))

시·도	합계 (마리)	비율* (%)	개			고양이			기타(토끼 등)		
			마리	비율* (%)	비율** (%)	마리	비율* (%)	비율** (%)	마리	비율* (%)	비율** (%)
서울	4,866	4.3	2,489	3.1	51.2	2,132	6.8	43.8	245	16.1	5.0
부산	6,062	5.3	2,756	3.4	45.5	3,214	10.2	53.0	92	6.0	1.5
대구	4,320	3.8	1,631	2.0	37.8	2,611	8.3	60.4	78	5.1	1.8
인천	5,764	5.1	2,983	3.7	51.8	2,624	8.3	45.5	157	10.3	2.7
광주	3,136	2.8	1,367	1.7	43.6	1,714	5.4	54.7	55	3.6	1.8
대전	1,785	1.6	1,313	1.6	73.6	403	1.3	22.6	69	4.5	3.9
울산	2,950	2.6	1,225	1.5	41.5	1,692	5.4	57.4	33	2.2	1.1
세종	438	0.4	355	0.4	81.1	79	0.3	18.0	4	0.3	0.9
경기	21,473	18.9	15,964	19.9	74.3	5,089	16.1	23.7	420	27.6	2.0
강원	5,603	4.9	4,262	5.3	76.1	1,294	4.1	23.1	47	3.1	0.8
충북	4,211	3.7	3,084	3.8	73.2	1,048	3.3	24.9	79	5.2	1.9
충남	8,078	7.1	6,337	7.9	78.4	1,678	5.3	20.8	63	4.1	0.8
전북	8,776	7.7	6,406	8.0	73.0	2,326	7.4	26.5	44	2.9	0.5
전남	9,384	8.3	7,966	9.9	84.9	1,388	4.4	14.8	30	2.0	0.3
경북	9,312	8.2	7,997	9.9	85.9	1,290	4.1	13.9	25	1.6	0.3
경남	12,273	10.8	10,136	12.6	82.6	2,088	6.6	17.0	49	3.2	0.4
제주	5,009	4.4	4,122	5.1	82.3	855	2.7	17.1	32	2.1	0.6
계	113,440	—	80,393	—	70.9	31,525	—	27.8	1,522	—	1.3
비율** (%)	—	—	70.9	—	—	27.8	—	—	1.3	—	—

※ 지역별 현황, %: 경기 18.9 > 경남 10.8 > 전남 8.3 > 경북 8.2 순
* 동일 축종 내 지역간 비율(%)
** 동일 지역 내 축종간 비율(%): (서울) 개 51.2, 고양이 43.8, 기타 5.0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2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3.8.10.

[구조동물 구조·보호 현황(연도별, 축종별 %)]

(단위: 마리, 비율(%))

연도별	전체		개			고양이			기타(토끼 등)		
	합계	증감 (전년비,)	마리	비율* (%)	증감 (전년비,)	마리	비율* (%)	증감 (전년비,)	마리	비율* (%)	증감 (전년비,)
2016년	89,732	—	63,602	70.9	—	24,912	27.8	—	1,218	1.4	—
2017년	102,593	↑ 14.3	74,337	72.5	↑ 16.9	27,083	26.4	↑ 8.7	1,173	1.1	↓ 3.7
2018년	121,077	↑ 18.0	91,797	75.8	↑ 23.5	28,090	23.2	↑ 3.7	1,190	1.0	↑ 1.4
2019년	135,791	↑ 12.2	102,363	75.4	↑ 11.5	31,946	23.5	↑ 13.7	1,482	1.1	↑ 24.5
2020년	130,401	↓ 4.0	95,261	73.1	↓ 6.9	33,572	25.7	↑ 5.1	1,568	1.2	↑ 5.8
2021년	118,273	↓ 9.3	84,723	71.6	↓ 11.1	32,098	27.1	↓ 4.4	1,452	1.2	↓ 7.4
2022년	113,440	↓ 4.1	80,393	70.9	↓ 5.1	31,525	27.8	↓ 1.8	1,522	1.3	↑ 4.8

* 동일 연도 축종간 비율(%): (2022년) 개 70.9 고양이 27.8, 기타 1.3